

2022년도 공익적의료기술 연구사업 [국제 공동치매 연구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] 신규과제 제안요청서(RFP)

제안요청서 (세부사업명)	한국형 치매 (K-dementia) 통합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	공모 유형	품목지정형	기술료 납부대상	X
사업유형 해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,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형 R&D,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				
기획시 참조사항	1. 선정평가관련 • 주관연구책임자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 필요 2. 과제관리관련 • 데이터 표준화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계획 및 표준화 모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점검 필요 •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 데이터 셰어링 IRB 승인을 받은 공공 및 민간 기관들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 이외의 다른 데이터 종류 수집 여부 확인 필요 •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평가를 통해,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다음 단계 연구 과제 수행 여부(go-no/go) 결정 3. 최종평가관련 • 데이터 하모니제이션 플랫폼이 폭넓은 활용 견인 가능성에 대한 평가 •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의 개방형 수집, 교환, 분배를 위한 기능성 평가				

▶ 지원목적

- 일반인, 경도인지장애, 치매* 환자를 포함하는 코호트에 대한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
- 데이터별 표준화 모델 구축 및 이종 데이터 통합을 위한 하모니제이션(harmonization) 플랫폼 구축
- 한-미 국제협력연구 등 관련 데이터 교류의 기반확보

* **치매 기준:** 치매는 사람의 정신(지적)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실을 말하며, 어떤 사람의 일상생활의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 치매라고 정의함, 원인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, 혈관성치매, 파킨슨병, 루이 소체 치매, 헌팅톤병, 크루츠헤트-제이아쿰병, 픽병 등이 포함되고, 경도인지장애, 치매의 다른 원인들과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질환들 (조발성치매, 전두엽치매, 알콜성치매), 기타 치매 (유전성, 대사성, 염증성, 외상성, 가성치매 등)등이 속함 (출처: 대한치매학회)

▶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기관은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 기간	연간 연구비 (1차년도)	협약형태	선정예정 과제수	과제 형태
한국형 치매 (K-dementia) 통합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	3년 이내	1,334백만원 이내 (1,000백만원)	다년도	1	

※ 1차년도 연구기간 9개월 이내, 연구비는 9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

※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- 성과목표: 한국형 치매 (K-dementia)통합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

□ 연구내용:

○ 치매 관련 데이터* 종류 정의

* 치매 환자 임상 데이터, KOGES 치매 관련 변수, 중앙치매센터 안시스테이터, 치매 관련 유전체, 전사체, 단백질 데이터, 영상 데이터 등을 포함

○ 활용의 기본 인프라로서 대규모 치매 코호트** 구축

* 활용을 위한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야함

** 치매환자, 경도인지장애 환자, 일반인 등을 포함하는 후향적, 전향적 코호트

○ 치매 데이터 종류별 데이터 표준화 모델 및 이종 데이터 하모니제이션 플랫폼 구축

* 국제 치매 데이터 통합을 위해 미국 NIH에서 개발한 SNOMED CT 등 국제 표준화 모델을 포함해야 함

○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참여기관과 연계된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개발

* 치매 데이터 수집, 관리(교환, 분배) 및 시각화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

※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데이터 공개 및 활용(국가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등 국가바이오데이터 사업과 연계), 국제공동연구 등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

▶ 특기사항

○ 과제 선정 후 연구책임자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

○ 과제의 최종평가는 과제지원 종료 이후 1년간의 성과등록기간을 거친 후 실시(단, 최종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)

○ 과제 선정 후 연구책임자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,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위한 중점분야별 협의체 구성·운영에 참여해야하며, 해당 협의체 참여 실적은 향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

▶ 선정평가 기준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구두 평가	1.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(6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함 - 연구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 ○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함 - 연구 추진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함 ○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임
	2. 연구개발 역량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의 우수성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 ○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 능력의 우수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
	3. 연구개발 성과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의 성공가능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·경제·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음 -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및 확산 계획이 충분히 고려됨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증진, 질병극복,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